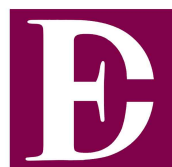


제 2 차 정기총회

2022. 2. 19. (토)



경제민주주의21
Economic Democracy 21

- 목 차 -

1. 진행 관련

- 1) 경과보고 2
- 2) 개회 안내 4

2. 안건

- 1) 2021년 사업 결산의 승인의 건 5
-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의 건 11

3. 표결 및 회의록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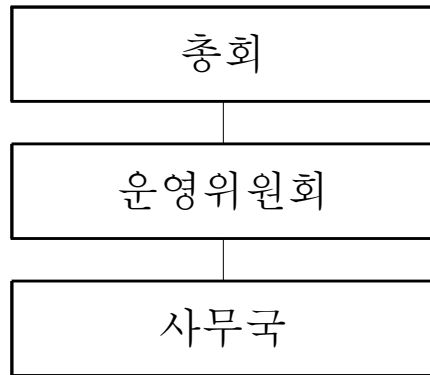
4. 경제민주주의21 정관 19

진행 관련

경과보고
개회 안내

1 경과보고

가) 조직 구성



성 명	직 책
김경을	대표
김종휘	운영위원
전성인	운영위원
조혜경	운영위원
손 혁	감사
김태운	사무국 간사

나) 주요 연혁

- (2019.12.)회원들 간에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새로운 시민단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
- (2020.1.)경제민주주의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경제민주주의21 설립을 추진
- (2020.2.)경제민주주의21 단체 설립 및 활동 개시 준비
- (2020.3.11.)경제민주주의21 활동 개시 및 창립 기념 좌담회 개최
- (2020.3.11.)김경을 회계사, 초대 대표에 취임
- (2021.11.20.)제1차 정기총회 개최

1 경과보고

다) 전차 회의 보고

< 서식 2 >

총 회 의 사 례

1. 회의일시 : 2021.11.20.(토) 11:00~12:00
2. 회의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3. 회의안건 : (1) 2020년 사업 계획,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 사업 예산, 결산 심의의 건
4. 출석회원 : 강영준, 권로미, 권재현, 권태우, 김경울, 김대학, 김동우, 김인철, 김중휘, 김찬휘, 김태윤, 김현, 김현아, 노정태, 문현실, 민효홍, 박성현, 박태하, 배준기, 서명규, 서승욱, 서지석, 손혁, 신길호, 신도선, 신동환, 신명철, 신원용, 안정일, 연주희, 윤태영, 이연경, 이원아, 이종학, 전태호, 장현정, 조상호, 조연수, 조현권, 조혜경, 최동렬, 최소영, 최양균, 하숙례, 현서아, 황혜주
5. 회의내용
 - 개회: 김경울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원 45명이 참석하여 총회가 시작됨
 - 안건 보고: 김태윤 간사가 (1) 2020년 사업 계획,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 사업 예산, 결산 심의의 건의 두 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이 동의하여 순차적으로 안건을 논의함
 - 2020년 사업 계획, 예산, 결산 승인의 건: 김경울이 2020년도의 운영성과표를, 손혁 감사가 회계 감사보고서를, 김태윤이 202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 실적/총평을 보고하자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2021년 사업 예산, 결산 심의의 건: 김태윤이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보고함. 신원용이 수지예산서 중 여비교통비와 회의비를 활동에 맞춰 증액할 것을 제안하자, 조혜경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운영위원들에 한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론함. 최소영이 사업계획서 중 회원 참여형 활동과 회원 모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자, 김경울이 단체가 소규모인 상황에서 권력 감시 활동에 집중하되 점차 착안할 것을 보론함. 이에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폐회: 김경울이 폐회를 선언함

2021년 11월 20일

대 표 김 경 울
운영위원 김 중 휘
" 손 혁
" 조 혜 경



2 개회 안내

가) 절차

- 공고(이메일/문자메세지/홈페이지): 2월 9일(수)
- '위임장' 접수 마감: 2월 18일(금)
- 개회: 2월 19일(토)
- '서면결의서' 접수 마감: 2월 20일(일)

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18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중

- 재적회원 125명, 개회 성원 25명, 의결 정족수 13명

다) 식순

배 분	내 용	
11:00~11:05	인사말	
11:05~11:10	개회 및 등록	
	기록 및 감표 안내	
	보고 및 안건 상정	
11:10~11:30	승인/ 심의	안건1) 2021년 사업 결산
		안건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11:30~11:55	기타 논의	
11:55~12:00	회의 결과 보고 및 폐회	

안 건

1) 2021년 사업 결산의 승인의 건

운영성과표

회계 감사보고서

사업 실적 및 총평

1 2021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운 영 성 과 표

제 2(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경제민주주의21

(단위 : 원)

과 목	제 2 (당)기 결산		제 2 (당)기 예산	
	금	액	금	액
I. 매 출 액		78,275,000		69,600,000
정 기 후 원 수 입	67,605,000		66,000,000	
부 정 기 후 원 수 입	10,670,000		3,600,000	
운 영 회 비 수 입	0			
II. 매 출 원 가		-		-
III. 매 출 총 이 익		78,275,000		69,600,000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38,824,684		43,389,800
직 원 급 여	20,160,000		20,160,000	
상 여 급	960,000		0	
여 비 교 통 비	45,500		480,000	
통 신 비	4,000		0	
세 금 과 공 과 금	2,084,500		2,700,000	
감 가 상 각 비	225,800		225,800	
지 급 임 차 료	6,600,000		6,600,000	
도 서 인 쇄 비	44,000		600,000	
회 의 비	186,850		1,200,000	
소 모 품 비	159,900		1,200,000	
지 급 수 수 료	4,834,134		6,000,000	
유 튜 제 작 비	3,520,000		4,224,000	
V. 영 업 이 익		39,450,316		26,210,200
VI. 영 업 외 수 익		751,264		50,000
이 자 수 익	55,667		50,000	
유 튜 운 용 수 익	695,597		0	
VII. 영 업 외 비 용		0		0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40,201,580		26,260,200
IX. 법 인 세 등		8,560		7,700
법 인 세 등	8,560		7,700	
X. 당 기 순 이 익		40,193,020		26,252,500

1 2021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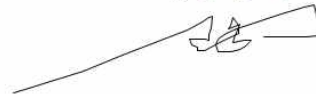
본 監事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경제민주주의21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업무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監事는 경제민주주의21의 회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 중요성의 관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본 監事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는 경제민주주의21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상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022년 2월 10일

監事 손혁



1 2021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 실적 및 총평

○ 사업 실적

논평 (공동)	보도자료	질의서	유튜브
12(11)	4	1	20

- (2021.1.7.)유튜브 생방송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 사과하라」
- (2021.1.18.)논평 제28호 ‘이재용 징역 2년 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 (2021.2.5.)유튜브 생방송 「이상직 의원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합리적 의심」
- (2021.2.24.)논평 제29호 “성범죄’를 ‘가덕도’로 가릴 수 없어. 선거용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기되어야 마땅’
- (2021.2.25.)유튜브 생방송 「검찰개혁인가? 검찰파괴인가?」
- (2021.3.5.)논평 제30호 ‘부패완판을 초래할 중수청 입법, 당장 중단하라’
- (2021.3.10.)유튜브 생방송 「LH 투기사건이 아닌 제3기 신도시 투기사건」
- (2021.3.12.)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양향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지점의 각 임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 (2021.3.16.)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 (2021.3.16.)논평 제31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도를 넘는 쌍용차 노조 희롱 즉각 중단하라’
- (2021.3.22.)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 (2021.3.26.)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
- (2021.4.2.)유튜브 생방송 「복수의결권 누구 좋으라고 도입하냐?」
- (2021.4.8.)논평 제32호 ‘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 (2021.4.14.)공동성명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2021.4.18.)유튜브 생방송 「검언유착? 범언유착 아니고?」
- (2021.4.21.)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대표이사 이철 등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
- (2021.4.28.)공동성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2021.5.13.)논평 제33호 ‘김형연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 사임을 촉구한다’
- (2021.5.21.)논평 제34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동의를결 없이 고발해야’
- (2021.5.22.)유튜브 생방송 「그 많던 현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VIK 탈세제보 관련)」
- (2021.5.28.)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 (2021.6.4.)논평 제35호 ‘정부·여당은 이재용 사면론 부채질 말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공약 이행하라’
- (2021.6.19.)유튜브 생방송 「'조국의 시간' 팩.트.로 까주마」
- (2021.6.25.)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2021.7.16.)유튜브 생방송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과 명의대여」
- (2021.7.22.)유튜브 생방송 「우리들병원(두번째)」

1 2021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 (2021.8.6.)논평 제36호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2021.8.10.)논평 제37호 ‘문재인 정부 양두구육식 재벌개혁의 실제 이재용 가석방을 규탄한다’
- (2021.8.10.)유튜브 생방송 「오피머스 펀드 사기(첫번째)」
- (2021.8.13.)유튜브 생방송 「정경심 2심 판결」
- (2021.8.13.)공동성명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2021.8.27.)유튜브 「문재인 정부와 최저임금 - 2022 대선 대비 경제/노동 공약 분석 1화」
- (2021.9.3.)유튜브 생방송 「이재용 가석방(feat. 판결문) - 2022 대선 대비 경제/노동 공약 분석 2화」
- (2021.9.6.)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2021.9.15.)유튜브 생방송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 (2021.9.27.)유튜브 생방송 「과잉 배당 논란과 "자칭 에쿼티"」
- (2021.9.29.)논평 제38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 및 동일한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 (2021.10.14.)유튜브 생방송 「대장동 컨소시엄 메리트와 산업은행은 들러리?」
- (2021.11.10.)유튜브 생방송 「정규직 규모 줄고 비정규직 무려 800만!」
- (2021.11.24.)공동성명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2021.11.25.)보도자료 ‘대선 후보자들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2021.12.6.)공동성명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 (2021.12.8.)공동성명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2021.12.15.)논평 제39호 ‘2021년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불공정을 규탄한다’
- (2021.12.15.)유튜브 생방송 「선 넘은 공수처의 이동통신 정보조회」
- (2021.12.21.)유튜브 생방송 「대장동은 묻으려고?」

1 2021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 총평

- 월 1~2회 정도 방송 횟수와 간격을 유지하는 등 단체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유튜브의 비중이 확연히 늘어났음. 고정 코너인 ‘김경을 해피사의 일해라 절해라’는 대장동 이슈 관련한 주제로 상당한 조회수와 구독자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하여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2022 대선 대비 경제/노동 공약 분석’ 등 코너를 통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노동 이슈와 정책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음.
- 이재용 가석방,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대장동 개발사업 특검,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란, 성남FC 기업 후원금 관련 등 경제민주주의 이슈에 논평을 꾸준히 발표하였음. 이 외에도 언론중재법, 선관위 COVID-19 대선 대책 촉구, 재·보궐선거 등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였음. 또한 복수의결권 관련해서는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타 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며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음.
- 이 외에도 대검찰청에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 관련 양향자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대검부장·고검장 수사 회의록 공개 요청하였음. 또한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대표이사 이철이 투자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탈세 제보하였음.
- 상기의 유튜브와 논평, 공동성명, 기자회견, 수사 의뢰, 탈세 제보 등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였으나, 오미크론 등 COVID-19의 확산세에 따라 정책토론회 등 2021년 사업 계획에 포함되었던 일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음. 2022년 현재에도 방역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슈리포트 발행 등 여타 활동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안 건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의 건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서

I. 주요사업 목표

1.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발표
2.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3.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회원 확대 계획

II. 세부사업 내용

1.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발표

가. 목적:

- 1)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1장 제4조의 2의 목적사업에 해당함
- 2) 경제민주주의 관련 현안에 입장을 발표하고 연대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논평, 공동성명, 기자회견, 유튜브 방송 등 다변화된 매체들을 활용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경제민주주의21의 활동과 취지를 확산시키고자 함

나. 사업내용:

- 1) 시행시기: 2022년 연내
- 2) 장소: 온라인 배포, 기자회견 현장 등
- 3) 구체적 내용

구분	예상 횟수	내용	발표 방법
논평	24회	경제민주주의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 발표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보도자료	6회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단체의 구체적 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공동성명	10회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유관 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입장 발표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기자회견 현장
유튜브 방송	18회	경제민주주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발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540,000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5,000원*12개월 - 유인물 등 월 10,000원*12개월
유튜브 제작비	4,224,000	- 스튜디오 이용료 176,000원*24회
합계	4,860,000	

마. 향후계획:

- 1) 특정 사안에 대해 경제민주주의21 단체 차원으로 결합하여 활동을 지속함
- 2)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다수 시리즈로 기획하여 2021년 사업으로 확장함

2.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가. 목적:

- 1)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1장 제4조의 1, 3, 4의 목적사업에 해당함
- 2)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특정 현안과 주제의 학술적, 정책적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사안의 해결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3)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들의 논의를 촉진하여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담론 형성과 여론의 관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나. 사업내용:

- 1) 시행시기: 2022년 연내 2회
- 2) 장소: 국회의원회관 등
- 3) 구체적 내용

구분	예산 횟수	내용	발표 방법
세미나	2회	- 경제민주주의 관련 현안에 관한 학술/정책 토론회 - 2022년 대선 대응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재, 유튜브 채널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조사 연구 ·세미나 ·출판	3,440,000	- 대관료: 300,000원*2회 - 회의비: 200,000원*3인*2회 - 도서인쇄비: (자료집 제본 50쪽*40부)200,000원*2회 (플래카드)100,000원*2회 - 다 과: 포장 1인 10,000원*40명*2회 - 발표자 여비/교통비: 120,000원*2회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마. 향후계획: 해당 사안이나 유사한 사안에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경우 세미나 자료집과 유튜브 콘텐츠 등이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 입법 제안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3.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가. 목적:

- 1)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1장 제4조의 5의 목적사업에 해당함
- 2) 경제민주주의에 반하여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동원 가능한 방안을 통해 개입하고 자정작용을 수행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 1) 시행시기: 2022년 연내
- 2) 장소: 국회의원회관 등
- 3) 구체적 내용

구분	예상 횟수	내용	발표 방법
수사 의뢰 ·탈세 제보 ·고소/고발 ·감사 청구 ·질의서 송부 등	5회	- 경제민주주의 관련 현안에 관한 대응 활동	보도자료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재, 유튜브 채널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통신비 (우편요금)	120,000	- 서류 우편 제출/접수 등 월 10,000원*12개월
교통비	240,000	- 현장 방문 등 교통비 월 20,000원*12개월
합계	360,000	

마. 향후계획: 기타 사업들의 경과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해당 사업이 단발성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함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4. 회원 확대 계획: 홈페이지 제작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동 소개

가. 목적:

- 1) 회원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21의 성격, 비전, 활동 방향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경제민주주의 자체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회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내용

- 1) 시행시기: 상시
- 2) 장소: 홈페이지, 유튜브 콘텐츠 등
- 3) 구체 사업내용: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고, 후원 회원 관리 시스템(www.donus.org)를 이용하여 회원 현황을 관리함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회원 관리	1,960,000	- 후원 회원 관리 시스템 사용료: 130,000원*12개월 - 뉴스레터/홍보물 디자인 비용: 200,000원*2회
회원 모임	1,600,000	- 임차료: 300,000원*2회 - 다 과: 포장 1인 10,000원*50명*2회
합계	3,560,000	

마. 향후계획:

- 1) 회원들이 납부하는 후원금이 경제민주주의21의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후원금 확대를 통해 활동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환기하고 더욱 다방면으로 활동을 확장함
- 2) 제1차 정기총회 당시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더욱 이끌어내자는 의견이 제기된바, 회원 모임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도록 함
- 3) 2022년 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하여 추후 회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수 지 예 산 서

제 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경제민주주의21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기	
	금 액	
I. 매 출 액		70,800,000
정 기 후 원 수 입	66,000,000	
부 정 기 후 원 수 입	4,800,000	
II. 매 출 원 가		-
III. 매 출 총 이 익		70,800,000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43,389,800
직 원 급 여	23,040,000	
상 여 금	960,000	
여 비 교 통 비	480,000	
통 신 비	120,000	
세 금 과 공 과 금	2,700,000	
감 가 상 각 비	225,800	
지 급 임 차 료	6,600,000	
도 서 인 쇄 비	600,000	
회 의 비	1,200,000	
소 모 품 비	1,200,000	
지 급 수 수 료	6,000,000	
유 튜 제 작 비	4,224,000	
V. 영 업 이 익		26,210,200
VI. 영 업 외 수 익		50,000
이 자 수 익	50,000	
유 튜 운 용 수 익	720,000	
VII. 영 업 외 비 용		-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26,260,200
IX. 법 인 세 등		7,700
법 인 세 등	7,700	
X. 당 기 순 이 익		26,252,500

표결 및 회의록

3 제2차 총회 회의록

< 서식 2 >

총 회 회 의 록

1. 회의일시 : 2022.2.19.(토) 11:00~12:00
2. 회의장소 : 온라인 총회
3. 회의안건 : 2021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2022년도 사업 계획/예산 심의 건
4. 출석회원 : 강영준, 김경울, 김대학, 김상진, 김찬휘, 김태윤, 노정태, 명정만, 박성현, 박태하, 박해천, 서지석, 손 혁, 신도선, 신원용, 이상일, 이장규, 이흥근, 정진영, 정현정, 조상호, 조연수, 조혜경, 차서현, 최소영, 한성숙, 현서아, 현영호, 황혜주
5. 회의내용
 - 개회: 김경울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원 29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시작됨
 - 안건 보고: 김태윤 간사가 (1) 2021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2) 2022년도 사업 계획/예산 심의 건의 두 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이 동의하여 순차적으로 안건을 논의함
 - 2021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김경울이 2021년도 운영성과표를, 손혁 감사가 회계 감사보고서를, 김태윤이 2021년도 사업 실적 및 총평을 보고하자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2022년도 사업 계획/예산 심의 건: 김태윤이 2022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에 산서를 보고하자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기타 안건 및 의견 제시: 신원용이 회원 모집 자료 제작 및 활용에 관해, 최소영이 각종 재단 건축물에 대한 단체의 감사 청구 활동, 2022 대선 공약에 대한 의사표명, 카카오톡 채널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활동/소통 창구 마련, 문구류 및 과일 등 현물기부, 자원봉사 및 답소모임 등 회원 참여 활동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자 회원들이 동의함.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공익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을 김경울과 김태윤이 보론하였고, 회원들은 우선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논평, 유튜브, 블로그까지 네 가지를 활용하여 활동/소통을 넓히는 것으로 의결함.
 - 폐회: 김경울이 폐회를 선언함

2022년 2월 19일

대 표 김 경 울 (인)
운영위원 손 혁 (인)
" 조 혜 경 (인)



경제민주주의21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경제민주주의21(이하 “본 단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경제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2.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본 단체의 입장 발표
3.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4.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표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 단체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가입비 및 개인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정한다.
2. 특별회원은 특별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로 정한다.
- ③ 회원의 가입자격과,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소정의 입

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단체의 장(이하 “대표”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납부가 완결된 이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회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대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먼저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 후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단체 발간물의 이용
 2. 본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의 참여
 3.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회 직담임권을 갖는다.
- ②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회직담임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③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① 본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운영위원
3. 감사

② 대표는 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수는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 ③ 본 단체의 임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본 단체의 최초 임원 선임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대표 직무대행자】 ① 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대표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 직무대행자는 대표의 궐위시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단체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② 감사 전원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대표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전원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

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운영】 ①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겸임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회장이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총회 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운영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원과 모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그 회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모임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6.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기타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 2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대표가 겸직한다.

제23조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매 1월, 9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운영위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3조 【정족수 및 업무】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과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은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서면(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서면 또는 문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허용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운영 방법】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계와 재정

제25조 【수익금】 ① 본 단체의 수익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 1.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
- 2. 기부금
- 3. 적립된 기금의 운영수익

4. 사업수익 및 기타 잡수익

- ② 회계연도 종료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는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③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특별회계】 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예결산의 보고의무】 ① 대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③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9조 【해산절차】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잔여 재산의 처분】 단체가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의 선임】 본 단체 설립 시 최초 임원은 본 단체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